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602)

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공고 제2022-240호, 2022. 12. 1., 제정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602)

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공고 제2022-240호, 2022. 12. 1., 제정]

국립소방연구원(소방정책연구실), 041-559-0592

1. 일반사항

- 1.1 적용범위
- 1.1.1 이 기준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별표 4의 소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.
- 1.2 기준의 효력
- 1.2.1 이 기준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- 1.2.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「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 능기준(NFPC 602)」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.
- 1.3 기준의 시행
- 1.3.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.4 기준의 특례
- 1.4.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·개축·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전원수전설비의 배관·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- 1.5 경과조치
- 1.5.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602)」에 따른다.
- 1.5.2 이 기준 시행 전에 1.5.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 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.
- 1.6 다른 법령과의 관계
- 1.6.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- 1.7 용어의 정의
- 1.7.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7.1.1 "과전류차단기"란「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」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.
- 1.7.1.2 "방화구획형"이란 수전설비를 다른 부분과 건축법상 방화구획을 하여 화재 시 이를 보호하도록 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.
- 1.7.1.3 "변전설비"란 전력용변압기 및 그 부속장치를 말한다.

- 1.7.1.4 "배전반"이란 전력생산시설 등으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아 분전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으로서 다음의 배전반을 말한다.
- (1) "공용배전반"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개폐기, 과전류차단기, 계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.
- (2) "전용배전반"이란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개폐기, 과전류차단기, 계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.
 - 1.7.1.5 "분전반"이란 배전반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으로서 다음의 배전반을 말한다.
- (1) "공용분전반"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분기개폐기, 분기과전류차단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.
- (2) "전용분전반"이란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분기 개폐기, 분기과전류차단기와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.
 - 1.7.1.6 "비상전원수전설비"란 화재 시 상용전원이 공급되는 시점까지만 비상전원으로 적용이 가능한 설비로서 상용전원의 안전성과 내화성능을 향상시킨 설비를 말한다.
 - 1.7.1.7 "소방회로"란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를 말한다.
 - 1.7.1.8 "수전설비"란 전력수급용 계기용변성기・주차단장치 및 그 부속기기를 말한다.
 - 1.7.1.9 "옥외개방형"이란 건물의 옥외 또는 건물의 옥상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수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.
 - 1.7.1.10 "인입개폐기"란「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」제16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.
 - 1.7.1.11 "인입구배선"이란 인입선의 연결점으로부터 특정소방대상물내에 시설하는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을 말한다.
 - 1.7.1.12 "인입선"이란「전기설비기술기준」제3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.
 - 1.7.1.13 "일반회로"란 소방회로 이외의 전기회로를 말한다.
 - 1.7.1.14 "전기사업자"란「전기사업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.
 - 1.7.1.15 "큐비클형"이란 수전설비를 큐비클 내에 수납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서 다음의 형식을 말한다.
- (1) "공용큐비클식"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수전설비, 변전설비와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.
- (2) "전용큐비클식"이란 소방회로용의 것으로 수전설비, 변전설비와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.
 - 2. 기술기준
 - 2.1 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의 시설
 - 2.1.1 인입선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.
 - 2.1.2 인입구 배선은 「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2)」2.7.2의 표 2.7.2(1)에 따른 내화배선으로 해야 한다.
 - 2.2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

- 2.2.1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방화구획형,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(Cubicle)형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.
- 2.2.1.1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
- 2.2.1.2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의 격벽으로 구획할 것. 다만, 소방회로배선과 일반회로배선을 15 cm 이상 떨어져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.
- 2.2.1.3 일반회로에서 과부하,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
- 2.2.1.4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"소방시설용"이라 표시할 것
- 2.2.1.5 전기회로는 그림 2.2.1.5와 같이 결선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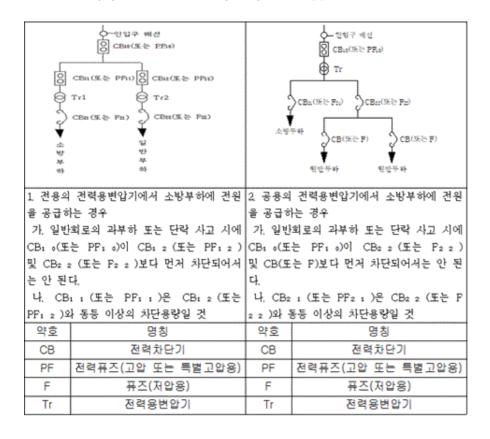


그림 2.2.1.5 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전의 전기회로

- 2.2.2 옥외개방형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.
- 2.2.2.1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할 것
- 2.2.2.2 공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할 것
- 2.2.2.3 그 밖의 옥외개방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2.2.1.2부터 2.2.1.5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
- 2.2.3 큐비클형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.
- 2.2.3.1 전용큐비클 또는 공용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
- 2.2.3.2 외함은 두께 2.3 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해야 하며, 개구부(2.2.3.3의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에는 「건축법 시행령」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서 60분+방화문,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2.3.3 다음의 기준(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(1)부터 (3)까지)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수 있다.
- (1) 표시등(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)
- (2)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
- (3) 환기장치
- (4) 전압계(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에 한한다)
- (5) 전류계(변류기의 2차 측에 접속된 것에 한한다)
- (6) 계기용 전환스위치(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)
 - 2.2.3.4 외함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
 - 2.2.3.5 외함에 수납하는 수전설비, 변전설비와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
 - 2.2.3.5.1 외함 또는 프레임(Frame)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
 - 2.2.3.5.2 외함의 바닥에서 10 ㎝(시험단자, 단자대 등의 충전부는 15 ㎝)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
 - 2.2.3.6 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에는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
 - 2.2.3.7 환기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
 - 2.2.3.7.1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할 것
 - 2.2.3.7.2 자연환기구의 개부구 면적의 합계는 외함의 한 면에 대하여 해당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할 것. 이 경우하나의 통기구의 크기는 직경 10 mm 이상의 둥근 막대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.
 - 2.2.3.7.3 자연환기구에 따라 충분히 환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
 - 2.2.3.7.4 환기구에는 금속망, 방화댐퍼 등으로 방화조치를 하고,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
 - 2.2.3.8 공용큐비클식의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
 - 2.2.3.9 그 밖의 큐비클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2.2.1.2부터 2.2.1.5까지의 규정 및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
 - 2.3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
 - 2.3.1 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전용배전반(1 · 2종) · 전용분전반(1 · 2종) 또는 공용분전반(1 · 2종)으로 해야 한다.
 - 2.3.1.1 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.
 - 2.3.1.1.1 외함은 두께 1.6 mm(전면판 및 문은 2.3 mm)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
 - 2.3.1.1.2 외함의 내부는 외부의 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열성 및 단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단열할 것. 이 경우 단열부분은 열 또는 진동에 따라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.
 - 2.3.1.1.3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.
- (1) 표시등(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)
- (2) 전선의 인입구 및 입출구
 - 2.3.1.1.4 외함은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, 당해 접속부분에는 단열조치를 할 것
 - 2.3.1.1.5 공용배전반 및 공용분전반의 경우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되어야 할 것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3.1.2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.
- 2.3.1.2.1 외함은 두께 1 mm (함 전면의 면적이 1,000 m²를 초과하고 2,000 m² 이하인 경우에는 1.2 mm, 2,000 m²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.6 mm)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
- 2.3.1.2.2 2.3.1.1.3(1) 및 (2)에서 정한 것과 120 [℃]의 온도를 가했을 때 이상이 없는 전압계 및 전류계는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것
- 2.3.1.2.3 단열을 위해 배선용 불연전용실 내에 설치할 것
- 2.3.1.2.4 그 밖의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.3.1.1.4 및 2.3.1.1.5의 규정에 적합할 것
- 2.3.1.3 그 밖의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.
- 2.3.1.3.1 일반회로에서 과부하·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
- 2.3.1.3.2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"소방시설용"이라는 표시를 할 것
- 2.3.1.3.3 전기회로는 그림 2.3.1.3.3과 같이 결선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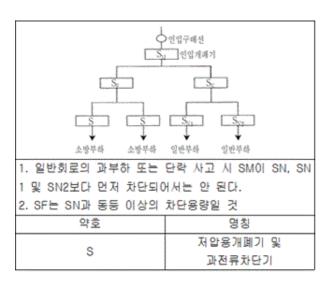


그림 2.3.1.3.3 저압수전의 전기회로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